



서울교육대학교와 서울대학교 간 학술교류 협정서



제1조(목적) 서울교육대학교와 서울대학교(이하 '양 교' 라 한다)는 교육 및 연구 분야의 교류를 통해 학문발전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협정을 체결한다.

제2조(협력분야) 양 교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.

1. 교수 및 연구 인력의 교류
2. 학생교류(대학원생 포함) 및 상호 학점인정
3. 학술공동연구 추진 및 학술회의 공동개최
4. 공동연구사업 추진
5. 학술자료, 출판물 및 정보의 상호 교환
6. 행정, 경영, 관리 등 학문연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
7. 기타 필요한 사항

제3조(시행방법) 이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양 교의 학칙 및 규정을 따르며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.

제4조(효력) 이 협정서는 양 교 총장이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가지며, 어느 일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지속된다.

제5조(기타) 이 협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씩 보관하며, 상호 합의하에 수정하거나 파기할 수 있다.

2025년 2월 21일

서울교육대학교

서울대학교

총장 장신호

총장 유홍림

장신호

유홍림